

kiri Weekly

2013.10.7 제253호

이슈

민영간병보험의 발전방향

글로벌 이슈

미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의 원인과 영향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민영간병보험의 발전방향

조용운 연구위원, 김미화 연구원

요약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간병보험은 이에 부응하여 보장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 민영간병보험은 치매 및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 보장은 물론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자에게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현재 감독자는 노후의료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병 관련 부분을 포함시키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민영간병보험은 여러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제도변화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가 예상됨.
 -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최근 유병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기대 밖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됨.
 -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의 발생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 민영간병보험은 아직 보장이 다양하지 못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은 치매에 못지않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로 치매 보장에 집중되어 있고 1회성 보험금 지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의 경우 사실상 상당히 진척된 중증상태만을 보장하고 있음.
- 민영간병보험은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장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개발에 신중해야할 것임.
 - 치매 보장은 추세율을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시간에 따라 보험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뇌졸중·심장질환 등의 주요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연금형태로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며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은 1회성 지급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적절할 것으로 봄.

1. 검토 배경



-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가족간병에 의존할 수 없게 되어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가 2.7명에 불과하고,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비중도 2000년 24%에서 2012년 26.1%로 증가하였음.¹⁾
- 더욱이 ‘건강한 노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면서 보험의 역할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GBD 연구²⁾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6세, 건강수명³⁾은 70.3세로 9년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생애 마지막 9년을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2.5개로 나타남.
- 이에 부응하여 최근 민영간병관련 보험의 경우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위험요인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영간병보험은 치매 진단과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최근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현재 감독자는 노후의료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병 관련 부분을 포함시키고자 다 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본고는 민영간병 관련 보험의 보장내용 및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민영간병보험의 상품개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2).

2)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0(GBD 2010) Healthy Life Expectancy 1990–2010,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 2012.

3)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

2. 민영간병보험 현황 및 위험요인



가. 민영간병보험 보장내용

- 생명보험회사는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시 연금형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간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상품개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일상생활장해상태”⁴⁾등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시 보험금이 1회 혹은 연금형으로 지급됨.
- 손해보험회사는 “활동불능상태”에 대한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⁵⁾의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주로 최초 1회 진단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상품도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민영간병보험은 “치매상태”를 보장하여 특정 질병과 관련한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음.
 - 주로 최초 1회 진단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민영간병보험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상당히 진척된 일상생활불능상태를 보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급여하므로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은 일상생활불능상태를 보장하는 것임.

4)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여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중증인 상태를 말함.

5)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인 사람 중 노인성 질환자(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로서 장기간병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등급평가가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 및 특기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장기요양인정 등급(1, 2, 3)을 결정함.

- 공·사 간병보험은 정신적·신체적 요인에 기인한 상당히 진척된 일상생활불능에 대한 보장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1〉 보험회사의 간병비 보장보험 보장내용

보장 내용	지급 사유	지급 방식
생명보험		
장기간병비	·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 또는 “일상생활 장해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회 지급 · 매월 1~3년간 지급(2개 회사) · 매월 혹은 매년 10년간 지급(2개 회사) · 생존기간 지급(1개 회사)
손해보험		
장기간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 활동불능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회 지급 (1개 회사는 매월 5년간 지급)
치매간병비	·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병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회 지급 · 매월 1회 5년간 지급(또는 10년간 지급)

나. 민영간병보험 실적 추이

■ 민영간병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아직 크지 않음.

-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FY2011 기준으로 약 148만 건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중신보험 보유계약 건수 대비 13% 수준임.
 - 보유계약 건수는 두 자리 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손해보험사의 경우 간병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FY2012 기준으로 약 78만 건이며, FY2011 약 30만 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장기손해보험 보유계약 건수 대비 1.8% 수준에 지나지 않음.

〈표 2〉 민간 간병보험의 보유계약 건수

(단위: 건,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
생명	보유계약건수	1,010,085 (96.7)	1,295,394 (28.2)	1,479,531 (14.2)	1,641,530 (10.9)
	종신보험 대비 비중	9.8	12.1	13.0	-
손해	보유계약건수	181,620 (33.0)	218,308 (20.2)	300,837 (37.8)	775,071 (157.6)
	장기손해보험 대비 비중	0.6	0.7	0.8	1.8

주: 1)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2) 보유계약건수는 손해보험 8개사, 생명보험 13개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가 조사한 자료임.

- 손해보험의 높은 성장률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임.

다. 민영간병보험의 위험요인

- 현재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보험은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정부가 복지강화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는 315,994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341,788명으로 증가함.⁶⁾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65세 이상 인구	신청자	인정자 수	등급 외 판정자 수 ⁷⁾	신청자 대비 인정률
2010	5,448,984	622,346 (11.4)	315,994 (5.8)	149,783 (2.7)	50.8
2011	5,644,758	617,081 (10.9)	324,412 (5.7)	154,034 (2.7)	52.6
2012	5,921,977	643,409 (10.9)	341,788 (5.8)	153,657 (2.6)	53.1

주: () 안은 노인인구 수 대비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2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6)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2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7) 등급 외는 A(45점 이상~51점 미만), B(40점 이상, 45점 미만), C 등급이 있으며, C 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로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말함.

- 급여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주로 3등급자 수의 급등에 기인함.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자 수 변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2008년 7월	50,000	39,000	57,000
2012년 2월	40,000	72,000	212,000
변화율(%)	-20.0	84.6	271.9

자료: 1) 이윤경(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보건사회연구원.
2) 메디칼투데이(2012. 5. 12).

- 2013년 7월부터 3등급자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3등급자의 수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종전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이었으나 2013년 7월부터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로 확대함(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⁸⁾
 - 정부는 기존의 완화로 2만 3,000명의 환자가 새롭게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⁹⁾
- 치매의 유병률¹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 추세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기준 9.18%로 추산되지만, 2050년에는 15.06%로 증가할 전망이다.¹¹⁾
 - 환자 수도 2012년 약 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치매 유병률과는 달리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3. 7. 1).

9) 뉴스토마토(2013. 6. 9).

10) 우리나라 인구 중 해당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3).

〈표 5〉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단위: %)

연도	치매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2008	8.40	7.9	7.6
2009	8.58	4.5	5.1
2010	8.74	6.9	4.5
2011	8.96	7.3	7.0
2012	9.18	-	-

주: 1) 치매 유병률: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2)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유병률: 의사로부터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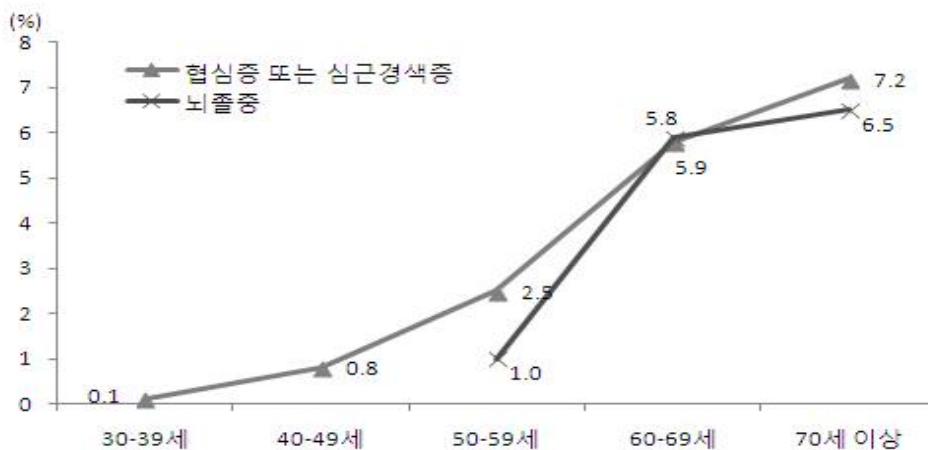
3) 뇌졸중 유병률: 의사로부터 뇌졸중 진단을 받은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2),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2012), 2008~2011 국민건강통계.

■ 고령화와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추세를 감안 할 때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는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2.5개로 나타남.
- 노인성 만성질환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함.

〈그림 1〉 주요 만성질환의 연령별 유병률(2011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1 국민건강통계.

3. 간병보험의 발전방향



-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비 및 간병비 지출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간병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간호서비스 실태조사¹²⁾’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는 전체의 36.6%로, 이 중 80%는 월 평균 210만 원의 간병비(종일 간병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증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간병인을 별도로 쓰는 환자들도 늘고 있음.
- 간병보장 확대를 위해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은 제도의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¹³⁾
 - 정부의 복지강화에 따라 최근 3등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요양등급의 인정기준 완화는 3등급자에 대한 민영간병보험의 지급 대상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임.
- 치매의 경우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므로 1회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연금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험료 산정 시 추세를 반영하여야 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설계하여야 할 것임.
- 중대 노인성 만성질환의 간병비를 연금형태로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면서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매 보장 외에도 뇌졸중·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의 주요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고려해 볼만 함.
 -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유병률은 연도별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세를 보이고 있는

12) 보건복지부가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13) 김석영(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민영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 치매의 경우 보다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예상 밖의 보험금 지급 증대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민영간병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일상생활장애상태” 혹은 “활동불능상태”의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이므로 1회성 지급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적절할 것으로 봄.

- 민영간병보험은 간병보장을 통한 역할 확대가 요구되지만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위협요인을 면밀히 감안하여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봄.

kiri